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 및 재개제도Ⅲ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이 특별약관은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개인실손 계약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여행 실손의료비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비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중지하려는 개인실손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인 경우 (실효 상태가 아닌 유효한 계약으로, 중지시점까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계약에 한함)
2. 제1항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비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합니다)에 중복가입되어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

<용어풀이>

<단체실손의료비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중지는 이루어집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중지 청약을 받고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중지 확인서'와 '중지지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지지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중지지급금>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지한 보장종목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합산액을 말합니다.

- ④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회사는 중지한 개인실손 보장종목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지한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중지가 성립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중지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알림톡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서 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고 계약중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중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중지 청약철회 신청 시 이미 지급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철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제3조 제12항 및 제13항 포함),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초과할 경우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재개된다는 점,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 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알림톡 포함)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⑧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중지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

당 보험종목에 대해 중지처리를 합니다.

제3조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 ①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를 청약하여야 하며,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재개를 청약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따라 계약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재개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재개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실손 계약종료 전이라도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중지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기본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기본계약의 소멸>

- ① 기본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을 받고,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재개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재개보험료>

계약자가 개인실손을 재개하기 위해 재개 청약일에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중지된 개인실손으로 재개시 다음 각 목을 더한 금액을 재개보험료로 합니다.
 - 가.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재개 청약일 직전 갱신일[단,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재가입 계약인 경우 재가입일)부터 재개 시점 사이에 갱신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갱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재가입 계약인 경우 재가입일)]부터 재개 청약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
 - 나.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납입주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재개 청약일부터 다음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2. 재개 시점에 '재개용 개인실손'으로 재개시 : '재개용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
- ⑤ 회사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중지되었던 개인실손이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알림톡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⑥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중지된 상태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재개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 ⑦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제12항 및 제13항 포함), 재개용 개인실손으로 계약재개 시 계약중지된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되는 경우 계약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⑧ 회사는 계약재개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재개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재개의 청약과 함께 재개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재개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⑨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재개를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중지 시점의 상품으로 계약을 재개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개인실손 중 노후실손 및 유병력자실손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이하 '기본형실손'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계약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기본형실손(이하 '재개용 기본형실손'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재개하고, 노후실손에 대해서는 계약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노후실손(이하 '재개용 노후실손'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재개하며, 유병력자실손에 대해서는 계약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유병력자실손(이하 '재개용 유병력자실손'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재개합니다. 다만, 재개시점에 재개용 기본형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에 판매한 재개용 기본형실손으로 계약을 재개하고, 재개시점에 재개용 노후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에 판매한 재개용 노후실손으로 계약을 재개하며, 재개시점에 재개용 유병력자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에 판매한 재개용 유병력자실손으로 계약을 재개합니다. 재개용 기본형실손, 재개용 노후실손 및 재개용 유병력자실손(이하 '재개용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⑪ 제10항에 따라 계약재개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보장이 개시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은 소멸합니다.
- ⑫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합니다.
1.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를 청약한 경우
 2.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 보장공백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 단, 보장공백기간 계산 시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모두에 대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단, 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판매한 개인실손을 말합니다.
 - 가. 보장종목
 - 나. 보험가입금액
 - 다. 자기부담금
 - 라.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 ⑬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제12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⑭ 계약재개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은 소멸됩니다.

제4조 (기타사항)

- ①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②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합니다) 및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의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따르며,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따릅니다.
- ⑤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